

ESG 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의 ESG 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장 구성 및 권한

제 3 조(구성)

-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독립이사를 2인 이상 포함하며 독립이사의 수가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
- ④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·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- ⑤ 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4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제 3 조 제 3 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.

제 5 조(위원회의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정책과 ESG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
- ② 위원회는 제 1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개최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별로 1 회 개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 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정하여 회일 1 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(결의 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결의 안건
 - (1)ESG 경영전략과 실행계획 수립
 - (2)주요 ESG 단체나 기구 등의 가입
 - (3)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
 - (4)사회 공헌의 추진방향,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
 - (5)이사회 부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ESG 경영 전략 이행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채권 발행
 - 2. 심의 안건
 - (1)ESG 실행 전략으로 이사회에 부의 되는 안건
 - 3. 보고 안건
 - (1)ESG 경영 전략 실행 성과

(2)중대한 리스크 대응 현황

(3)주요 외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대응 현황

- ESG 외부평가 / ESG 단체나 기구 대응 / 이해관계자 대응 등

- ②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SG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제 11 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12 조(통지 및 보고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의사록의 작성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4 조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 간사는 ESG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위원회 의사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5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은 이사회결의로 개폐할 수 있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제정·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

제 2 조(적용기준)

이 규정 제3조의 ②항 위원회 구성은 회사가 독립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. 또한, 독립이사가 1인인 경우, 위원회 구성은 독립이사 1명, 독립이사가 아닌 이사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.